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7.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5월 30일, 박정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9.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2. 19.) 상정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7. 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7. 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정의원)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의 지역공동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역공동체 회복과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내 자립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010년 12월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 후,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한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77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19,261명의 고용, 1,64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과를 내고 있고, 10여개소의 마을기업은 연 매출 20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체계적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조를 조성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제정의 필요성

행정안전부는 2010년 마을기업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800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근거법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이 곤란하고 세제 혜택이나 금융지원 등에도 어려움이 있음.

제정안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과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경제조직¹⁾ 중 유일하게 독자적 근거법이 부재한 마을기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안정적 성장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장기적·지속적으로 지역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

1)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표현함.

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²⁾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차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본칙 20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안 제3조),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②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6조), 시·도지사에게는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안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

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2201643호,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2024.7.12.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및 시·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두고(안 제9조 및 제10조),

③ 국가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안 제2조) “마을기업”의 요건으로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주도”할 것을 규정하면서, “마을주민”을 ① 마을기업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되는 자로서, ② 마을기업이 활동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정의하여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제정안에서는 “마을기업”이 활동하는 구역을 ‘지방자치단체3)의 구역’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과는 구별되는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게 지역 범위를 축소 설정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4).

3)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4)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서는 지역의 범위로 ‘읍·면·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정안은 마을기업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마을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의 책무를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있어 다소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6조(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구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안 제4조)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기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마을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마을주민이 마을기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이 ‘마을기업의 역할과 의무 조항’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마을기업에게 사업수익을 재투자하는 의무를 두는 조문은 마을기업에게 금전적 투자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5조)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까지 확대

제정안이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여 법률간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마을기업 육성 추진체계(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안 제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지역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는 법인으로, 지역주민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국가는 지자체가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 제9조) 안 제9조에서는 ‘마을기업지원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두면서 그 성격을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그 설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마을기업지원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으로,⁵⁾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⁶⁾,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⁷⁾,

유사 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재량으로 두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⁸⁾으로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23.5.16.개정, 2023.11.17.시행)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마을기업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에 제한되며, 지방시대위원회 등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 ‘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마을기업의 지정 및 육성(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정안에 따르면 마을 단위의 사업체가 마을기업의 요건을 갖추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고 나면, 안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지정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⁹⁾.

제정안의 목적이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마을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여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창출 토대를 마련하여 자립·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이에 마을기업의 지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기업의 성과에 대한

9) 현재 마을기업의 지정과 관련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지정의 유효기간 등과 같은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다만,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급은 최대 3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행 절차에 따르면 1차 지원을 받은 마을기업이 2차, 3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함.

심사를 통해 재지정의 절차를 거치는 등의 제도 마련을 통하여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후에는 자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정된 인력 및 예산을 필요한 기업에 분배¹⁰⁾하여 효과적인 마을기업 관리 및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11조) 안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받는 기업·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¹¹⁾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마을기업¹²⁾을 제정안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도시재생법」 제27조제1항제8호¹³⁾에서는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 또

10) 2023년 12월 기준 1,800개의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있음.

11) 제정안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

는 용자를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용자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제정안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보임.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정대상 자체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지정은 하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13조) 안 제13조는 마을기업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마을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사업자도 혜택을 받아
①가입자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고, ②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원칙(「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14)), ③건강

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1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보험 경감제도의 취지¹⁵⁾, ④보험료의 경감이 타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라. 마을기업 육성 기반조성(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안 제15조) 안 제15조는 마을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 및 주민 공동체 기반의 사업 등이 주된 내용에 해당함.

다만, 마을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규정이 제3장 ‘마을기업 육성 기반조성’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1조(마을기업의 지정 등)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안 제16조, 마을기업지원기관) 안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는 마을기업지원기관의 설치·운영 의무가 생기며,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운영 또는 위탁·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을기업지원기관은 현재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서 이미 설치·운영¹⁶⁾ 중임을

15) “건강보험 경감제도”는 지리적 여건(섬·벽지·도서지역)으로 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와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

16) “마을기업지원기관” 개요

고려할 때, 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안 제17조, 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우수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으로,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마을기업의 육성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매년 우수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안 제18조, 감독)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마을기업의 사업을 감독하고, 위법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개선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마을기업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임.

○ 주요 기능

- 마을기업 발굴 및 심사 지원
- 판로 확대, 유관 정책사업 안내 지원
- 마을기업 교육 및 컨설팅
-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 마을기업 관리 지원
- 마을기업 상호교류, 협업과제 발굴 등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

○ 2024년 마을기업지원기관 현황

시도	지원기관 명	시도	지원기관 명
서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기	재단법인경기도사회적경제원
부산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강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충북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인천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전북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대전	사단법인 대전마을기업연합회	전남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울산	(재)울산경제진흥원	경북	(사)지역과 소셜비즈
세종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경남	사회적협동조합 시드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 보칙(안 제19조 및 제20조)

(안 제19조) 마을기업 관련 업무 중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분야가 혼재된 마을기업 사업의 특성상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도 있으므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안 제20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의 지정을 받거나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바.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정비와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 있음.

(부칙 제2조 및 제3조) 제정안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과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둬으로써 기존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부칙 제4조) 부칙 제4조에서는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마을기업¹⁷⁾을 제정안에 따른 마을기업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두 법률의 ‘마을기업’ 정의는 유사한 점이 많으나, 「도시재생법」¹⁸⁾에 따른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¹⁸⁾를 갖고 있어 일부 차이점이 있음.

따라서, ‘「도시재생법」상 마을기업’을 제정안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개정하는 것은 「도시재생법」의 ‘마을기업’ 규정 취지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도시재생법」을 직접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